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0. 23.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김 정 일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인천광역시	단 장	안 광 찬		032-440-7801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담 당 자	이 은 실	 · 전 화	032-440-784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건 확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부산광역시	단 장	안 병 선		051-888-3330
시민방역추진단	담 당 자	이 정 민		051-888-3353
금융위원회	과 장	이 진 수		02-2100-1660
정책총괄과	담 당 자	오 승 준		02-2100-1663
고용노동부	과 장	김 동 욱		044-202-7740
산업보건과	담 당 자	김 원		044-202-77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고령층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대응방안,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현황 및 대응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막고자 금년에는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접종자 중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접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게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의학이나 과학적인 한계로 원인이 완벽하게 규명되기 어려울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 알려드리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진정성있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였다.
- □ 정 본부장은 항공을 통한 입국자는 모두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받도록 일원화되어, 지방공항 노선의 경우 검역을 위해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경유하여 다시 인천으로 가서 내려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토부와 방역당국에게 △항공노선
 조정 △검역시스템 보완 등 지방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경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지난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지급요건이 까다롭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하면서,
 - 생계를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분들에겐 단비와 같은 지원인 만큼, 복지부에게 현장의 문제점을 세심히 확인하여 개선·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많은 사람 의 방문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1주간 관내 총 248개소에 대해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 인원 제한·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 핵심방역 방역수칙 위반이 1회라도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및 벌금부과 등 시행
 - 한편, 시립체육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료를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라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 장애인복지관은 10인 이내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소규모 실내 프로그램의 운영을 검토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격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 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은 11월 2일(월)부터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로당은 10월 26일(월)부터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다.











- 인천시는 그 외 사회복지시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속 관리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인천시의 '홀덤(카드게임) 대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를 대비하여 10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양일간 도내 5개 시*의 홀덤펍 22개소를 긴급점검하였다.
 - * 고양 6 부천 7, 안산 3, 시흥 4, 김포 2
 - 그 결과 14개소가 영업 중이었고 이 중 13개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 조치하였다.

2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병상 확보방안 (부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요양병원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시는 2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격리, 전수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는 **동일집단 격리** 등을 실시하였고, 격리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은 **격리자 일부** 전원 등의 조치를 하였다.
 - 이와 함께 북구에 소재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주야간시설 및 양로원을 전수(43개소)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10월 19일(월)부터는 검사대상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요양 (정신)병원, 요양원(정신포함) 종사자, 주야간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2만 984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지난 10월 14일(수)과 15일(목)에는 관내 전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실태를 특별 점검하였고, 10월 15일(목)부터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하였다.
- 10월 22일(목) 기준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은 163개이며, 이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63개이다.
 - 이와 함께 **상급병원 등의 병상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 치료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 다만, 중증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 우선 민간의료기관의 중환자 음압 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여 관내 병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부·울·경 병상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타 시도의 병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1개의 확충**을 완료하는 등 환자치료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로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 관련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도권 내 금융회사, 콜센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방역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 특히, 불법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경우에는 단기간·음성적으로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전 인지가 어려워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10월 4주부터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탈법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유사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인지·제보 시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통해 감염 확산 방지, 투자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4 민간사업장 및 직업능력 훈련분야 방역현황 및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콜센터를 비롯한 물류센터, 직업소개소 등 취약 업종 민간사업장과 직업능력 훈련 분야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준수 지도를 위한 현장점검을 11월 중 실시하는 등 계속 이어나가고,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20.3월~)를 통해 각 부처별 소관 업종의 콜센터뿐 아니라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공콜센터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 ▲고용부-총괄 ▲국토부-택배·운송 ▲과기부-방송·통신 ▲산업부-가전·유통 ▲금융위-보험·금융 ▲권익위-다산콜센터 ▲행안부-지자체 및 소속기관 공공콜센터
 - 또한, 칸막이, 비접촉체온계 등 방역물품 비용은 그간 콜센터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11월부터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 감염 취약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비용지원 실적) 총 176개소 콜센터에 2.2억 원 비용 지원('20.9월 말 기준)
 - 또한, 지난 10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직업훈련기관**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새로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그간 집합 교육을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비용을 지원(525개소)하였고, 원격대체훈련 지침을 배포 (9.4.)하는 등 비대면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앞으로도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수시 방역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인구 이동	S이동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이동량	건수	통신사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수도권	서울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이용량	교통 이용	인천사경기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①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 첫 번째 **주말**(10월 17일~ 10월 1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87**천 건, 전국은 **72,942**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8.6%(2,839천 건), 전국은 6%(4,411천 건) 증가하였다.
 - * 수도권 : (10.10.~10.11.) 33,048천 건 → (10.17.~10.18.) 35,887천 건 전 국 : (10.10.~10.11.) 68,531천 건 → (10.17.~10.18.) 72,942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11.7%(2,362천 건) 증가하였다.
 - * 합산 이용량 : (10.10.~10.11.) 20,174천 건 → (10.17.~10.18.) 22,536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❸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2961억 원, 전국은 2조1782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0일~10월 1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9.5%(1,127억 원), 전국은 4.7%(978억 원) 증가하였다.
 - * 수도권: (10.10.~10.11.) 1조1834억 원 → (10.17.~10.18.) 1조2961억 원 전 국: (10.10.~10.11.) 2조804억 원 → (10.17.~10.18.) 2조178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15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42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98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4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10월 2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3,407개소, ▲ 학원·독서실 806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20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6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9개반, 760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워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하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하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 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 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